

2015. 8.

바른 감사 바른 시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감사결과



감사담당관실

<http://www.jeonju.go.kr>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감사결과

감사개요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6. 15. ~ 6. 18. (4일간)
- 감사범위 : '12. 5월 ~ '15. 4월말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 감사반 : 감사담당관 외 1개반 4명

□ 감사중점사항

- 협약서 이행실태 및 운영 전반
- 고정비, 변동비 등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실태
- 시설장비 및 물품관리 실태 등

□ 감사결과 : 8건 지적

구 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계획(천원)				신 분 상 심의결과(명)		
	계	시정	주의	계	감액	회수	기타	계	훈계	징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8	◇	○	△,△△		△,△△				

주요 지적 사항

1. DCS(분산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사항

- ◆◆◆◆◆(주)는 2014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DCS(분산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상대방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시에는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또한 DCS 유지보수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은 유지보수 후 결과보고서를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가는 신청에 의하여 익월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계약 상대방이 DCS유지보수 용역을 착수하게 하면서 용역공정예정표 및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대가는 신청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청구서를 제출받지 않고 결과보고서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보일러설비 약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등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등은 불용결정을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그런데, 미생물▲▲▲ 등 8종의 보일러 약품과 ●●● 등 6종의 폐수처리 설비약품을 구입하여 소각 시설에 사용하면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등 장부를 작성하여 정리 관리하여야 하는데, 약품불출내역서만 작성 관리하고 있었으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불용결정 하여 처분하여야 하는데, 보일러설비 약품인 냉각수용 부식 및 방지제(T-4000) 8개(160Kg)와 폐수처리시설 약품 중 16개(320Kg)의 약품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약품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등 약품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음.

3. 변동비 청구에 관한 사항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관리위탁 운영 협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 제 3항에 “고정비”란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위·수탁 운영·관리와 관련한 인건비, 관리비 이윤,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하며, 협약조건 이행 시 정산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하며, 제4항에 “변동비”란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위·수탁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고정비를 제외한 시설운영비와 이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고정비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 그런데, 식당의 도시가스료 및 음식물 수수료는 고정비 성격으로 변동비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년 1월부터 201◎년 4월까지 00개월간 식당의 도시가스료는 000,000원 ~ 000,000원씩 총0,000,000원, 식당의 음식물수수료는 0,000 ~ 00,000원씩 총000,000원을 매월 변동비로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4. 기간제 근로자 대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에 의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보존해야 한다.
- 또한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근로자 채용계획의 수립) 및 제8조(근로자 채용예정 보고)에 의하면 사용부서는 근로자 채용과 근로 현황파악을 위하여 근로자 채용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현황을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25조(임금)에

따라 임금대장을 비치하여 근로자의 임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그런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서는 201○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소각장시설 반입장의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청소인력을 채용하면서 구두상 보고를 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관리위탁 운영 협약서 제10조(운영비용 집행)제1항에 ◇◇◇◇◇(주)는 운영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본 협약서를 준수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년도)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1항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그런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서는 신원보증보험과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신원보증보험과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을 회계연도마다 가입하지 않고 신원보증보험은 201◇.0.00.~201○.0.00.(0년0개월)까지 가입하고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은 201○.00.00.~201◇.0.00.(0년0개월)까지 가입하였으며, 이러한 보험 가입에 따라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소각로 내화물 교체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소각장내 2호기 소각로 좌측벽체, 수냉벽 하단 내화물 및 1호기 우측 내화물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품질시험계획을 작성승인 받지 않음

7. 소각로 세정작업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 소각로 및 부대설비 세정작업을 시행하면서 세정작업 및 작업용 비계물량 산출시에는 안목치수로 산출하여야 하나 중심치수와 둘레치수를 적용하여 세정작업량은 00㎡, 작업용 비계량 00.0㎡가 과다 산출되어 이에 대한 공사금액 금0,00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8. 소각로 튜브교체공사에 관한 사항

- 소각로 튜브 교체공사 시행을 위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튜브 조립 및 설치 일위대가 작성시 비계공을 반영하였으나 비계매기 수량을 별도로 산출하였으므로 비계공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였고, 튜브 절단은 튜브철거 수량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반영한 결과 공사비 총00,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과다지급 함.